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704
----------	-------

발의연월일 : 2025. 10. 27.

발 의 자 : 박수영 · 서천호 · 윤영석
서일준 · 김재섭 · 최은석
곽규택 · 김상훈 · 강승규
권영세 · 조은희 · 이종욱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감사원 또는 자체감사기구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는 사후적·징벌적 감사제도를 사전적·예방적 감사제도로 전환하여 복지부동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임.

그런데 사전컨설팅 제도의 운영근거가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머물러 있고, 특히 그 핵심인 책임면책이 법률이 아닌 감사원규칙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음.

이에 사전컨설팅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이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면책하

도록 함으로써 적극 행정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22조의2 및 제23조의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전컨설팅”이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인 경우에는 자체감사 대상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전에 감사원 또는 자체감사기구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를 “중앙행정기관등에”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사전컨설팅)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원 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1. 인가·허가 등에 관한 업무
2.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을 신청받은 감사원 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의 운영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제22조의2에 따른 사전컨설팅을 거쳐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에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8. “사전컨설팅”이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인 경우에는 자체감사 대상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전에 감사원 또는 자체감사기구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자체감사활동 및 이에 따른 감사활동체계 등에 관하여 <u>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u>	제3조(적용 범위) ① ----- ----- ----- <u>중앙행정기관등에</u> -----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자체감사기구의 설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신설>

-----.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사전컨설팅)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원 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1. 인가·허가 등에 관한 업무
2.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을 신청받은 감사원 또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생략) <u><신설></u>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의 운영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경우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제22조의2에 따른 사전컨설팅을 거쳐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에 사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